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3년)이 2019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재산 현황

- 1) 시설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 2) 위치 :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99(백현리)
- 3) 조성비 : 1,740억원 (국비 344, 도비 12, 시비 1,384)
- 4) 시설규모
 - 부지면적 : 411,456m²
 - 환경자원화시설 면적 : 324,400m²
 - 주민편익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면적 : 87,056m²
 - 건축면적 : 10,245.09m²
 - 연면적 : 17,769.8m²
 - 매립면적 : 68,276m² (1단계)
 - 매립용량 : 1,142,000m³
 - 소각용량 : 200톤/일(100톤/일×2기)
 - 재활용선별시설 : 50톤/일
 - 침출수처리시설 : 300톤/일

5)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명
관리동	사무실(5), 식당(1), 시청각실(1), 회의실(2) 등
소각시설동	중앙제어실(1), 반입장(1), 소각시설(2), 방지시설(2) 크레인실(1), 실험실(1) 등
재활용선별동	사무실(1), 휴게실(1), 재활용시설(1), 창고(1) 등
침출수처리동	사무실(1), 전기실(1), 침출수처리시설(1) 등
주민편의시설동	목욕탕(남,여탕), 사무실(2), 회의실(1), 헬스장(1), 건강증진실(1), 행사장(1) 등
기타시설	축구장(1), 테니스장(1), 배드민턴장(3), 농구장(1), 야외공연장(1), 정비동(1), 경비동(1), 대형폐기물처리장(1), 세차동(1), EPR저장창고(1), 폐기물보관창고(1), 굴뚝(1) 등

나. 위탁기간 : 2020.01.01.~2022.12.31. (3년)

다. 위탁운영비

(단위:백만원)

년도	계	고정비 (인건비 등)	변동비 (시설유지비 등)	비 고
계	39,498	17,850	21,648	
2020	15,090	5,950	9,140	고정비 전액지급 (단,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 사후정산)
2021	12,748	5,950	6,798	
2022	11,660	5,950	5,710	
				변동비 정산지급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 임

※ 산출기준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11.5. 환경부)

3. 관계법령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9조
- 마.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재 산 현 황

구 분			건 물		토 지		비 고
			동 수	연면적(m²)	필 지	면적(m²)	
합 계			11	17,769.8	118	411,456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11	17,769.8	118	411,456	-환경자원화시설 송백로499외23필지 면적: 324,400m² 지역:계획관리지역 -주민편익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백현리 70-3외95필지 면적 : 87,056m² 지역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일반 재산	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계획

◇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9.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과 운영실적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하고자 함

1. 과업 개요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99 (준공일 : 2011.01월)
- 부지면적 : 411,456m²
 - ※ (환경자원화시설 324,400m² + 주민편익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87,056m²)
- 매립면적 : 68,276m²(1,142,000m³)
- 소각시설 : 200톤/일 (100톤/일×2기, 3단 구동화격자, 스토킨식)
- 선별시설 : 50톤/일 (재활용품 선별)
- 주민편익시설 : 목욕탕, 체력단련실, 회의실, 체육공원(축구장 등)
- 침출수처리시설 : 300톤/일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2. 과업 범위

-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계량관리·자료관리
- 소각시설(100톤/일×2기) 운전·유지관리 (소각 능력 유지)
-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계량 및 적정처리(안전한 최종처리 완수)
- 전력설비, 발전설비 등 운전·유지관리 (전기시설물 기능 유지)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전화, LAN설비, 인터폰, 무전기)
- 매립시설($68,276\text{m}^2=1,142,000\text{m}^3$) 운영·유지관리(매립기능유지)
- 침출수처리시설(300톤/일) 운영·유지관리
- 오폐수 저장조, 초기우수저장조 및 이송펌프 관리
- 폐기물크레인, 연소가스처리설비, 급배기설비, 압축공기공급설비
비상발전기,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화재진압설비, 급배수설비, 피뢰
및 접지설비, 계측제어설비 운영·유지관리
- 반입된 대형폐기물(폐가구류 등) 파쇄·적재 관리(보관부피 최소화)
-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 반입된 생활폐기물(방치폐기물) 적정처리
- 반입된 매트리스 보관·해체·처리
- 생활가전제품 보관·인계·적정처리
- 유해화학물질(수산화나트륨 등) 취급시설 유지관리
-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유지관리
- 재활용품 압축물 및 분류물 보관·계량·반출·매각
- 재활용 선별잔재물 적정처리
- 계량시설, 세차동, 경비실 운영 및 유지관리
- 환경자원화시설 내 수목, 잔디 등 제초·조경 관리
- 주민편익시설, 백현체육공원 운영·유지관리
- 홍보관 운영 및 견학·방문 안내
- 사무동, 중앙제어실(소각동), 주민편익시설, 침출수처리동 환경관리

[붙임1]

위탁대상 시설물 세부현황

□ 건축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알루미늄복합판넬

【관리동】

구분	연면적(m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1,810.79		
지상1층	784.89	홍보관	식당, 대회의실, 전시실, 시민홍보교육실
지상2층	798.52	사무실	사무실(5), 소회의실, 창고(2), 휴게실
지상3층	227.38	사무실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소각시설동】

구분	연면적(m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7,253.29		
지하1층	1,065.93	공조및기계실	폐기물저장조, 공정수저장조, 펌프실
지상1층	2,980.43	폐기물반입장	폐기물반입장, 스토카소각로
지상2층	1,607.17	중앙제어실	중앙제어실, 연소가스처리실, 실험실
지상3층	612.62	휴게실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 세탁실
지상4층	190.56	홀	홀, 복도
지상5층	796.58	크레인실	크레인조정실, 견학통로

【재활용시설동】

구분	연면적(m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2,403.65		
지상1층	2,262.12	반입장	재활용품반입장, 선별장, 기계실, 휴게실,
지상2층	141.53	전기실	전기실, 사무실, 운영실

【침출수처리동】

구분	연면적(m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2,073.81		
지하2층	251.50	환기실	송풍설비 및 기계실
지하1층	1,078.96	폐수처리실	폐수처리설비(침전조, 폭기조등)
지상1층	743.35	사무실	사무실, 전기실, 탈수설비

【주민편익시설동】

구분	연면적(m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2,850.72		
지상1층	1,319.48	행사장	지역행사장, 전시실, 사무실, 목욕탕
지상2층	1,039.38	헬스장	헬스장, 사무실(2),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지상3층	491.86	건강증진실	건강증진실

【기타시설】

시 설 명	연면적(m²)	사 용 용 도
계	1,382.94	
정 비 동	259.05	정비실, 사무실
경 비 동	46.65	경비실, 숙직실, 샤워장
세 차 동	224.64	세차실, 기계실
폐기물보관창고	180	TV, 냉장고, 매트리스 보관
EPR저장창고	177.6	폐기물보관
대형 폐기물적치장	495	목재, 가구, 소파류 보관
굴 뚝	80m	면적 48.98m²

□ 설비 및 부대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물 내 역	비 고
기계설비	폐기물크레인(2), 페이로다, 16톤암롤차량, 5톤암롤차량, 대형폐기물 파쇄기, 철금속선별기, 3원선별기, 소각로(2), 버너(6), 소각로유압장치(2), 화격자열교환기, 폐열보일러(2), 증기복수기, 탈기기, 반건식 반응탑(2), 여과집진기(2), 선택적촉매반응탑(2), 증기식가스기열기(2), 증기터빈, 발전기, 압입송풍기(2), 유인송풍기(2), 재추출기(2), 바닥재금속 선별기, 비산재저장조, 생활용수양수펌프(2), 공정용냉각수펌프(2), 가성소다탱크(2), 염산탱크(2), 활성탄여과기(2), 양이온교환수지탑(2), 음이온교환수지탑(2), 공기압축기(3), 악취배기송풍기, 냉각탑, 열교환기, 파분기, 트롬웰, 발리스틱, 마그네틱선별기, 알미늄선별기, 광선별기(4), 진동피더, 압축기(4), 분쇄기(3), 감용기(1), 유해가스흡착기, 포크레인, 콤팩트, 집게차, 탈수기(2), 스키로다, 전동지게차 등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비상발전기, 전력시스템, 실내조명시설, 옥외보안등설비 등	
실험설비	쓰레기분석설비1식, 소각재열작감량분석기1식, 연소가스분석기, 폐수분석기1식, 굴뚝자동측정기기(2)	
통신설비	CCTV(28), 구내통신선로, 구내유선방송설비 등	
소방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방송설비	홍보실	음향장비1식, 영상장비1식
	전관방송	음향장비1식
	주민편의시설 등	음향장비2식, 영상장비1식
부대시설	조 경	소나무 외 7종(교목2주, 332주, 관목37,650주), 초화류 17,405본, 잔디 39,119㎡, 파고라 8, 평의자 43, 등의자 25, 사각정자 7 등
	체육시설	테니스코트, 인조잔디축구장, 농구대, 배드민턴대(3), 러닝머신(6), 벤치프레스 등 24종(25), 전동안마의자(3), 두타베드 등 9종(16)
	주차장	121면 [트럭 18, 대형차 6, 버스 2, 승용차 91(장애인 4 포함)], 자전거보관소 5
	국기게양대	2식

관 계 법 령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 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 각호의 기관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화시설의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적성과 적법성을 시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도·군위원회 :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관 실·과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안 상 배
	담 당 자	최 명 식 (480-5242)